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18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송옥주 · 안태준 · 임미애
황명선 · 이상식 · 소병훈
윤준병 · 전종덕 · 이재관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도매·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하는 조사를 통한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간 가격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다. 산지가격·도매가격·소매가격 및 등급별 가격을 구분하여 공표하도록 함.
- 라.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고 거래가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함.
- 마.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계란 기준가격의 조사 및 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산지가격,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으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품종·등급·규격별 가격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란 기준가격 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가격조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 유통업자, 집하장, 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 활용하며, 거래당

사자의 계약 또는 가격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⑦ 기준가격의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표절차, 가격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가격조사기관 지정, 조사체계 구축 및 전산시스템 마련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5조의2(계란 기준가격의 조사 및 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산지가격,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으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품종·등급·규격별 가격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란 기준가격 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가격조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 유통업자, 집하장, 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 활용하며, 거래당사자의 계약 또는 가격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⑦ 기준가격의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표절차, 가격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